

(신청서 뒷면)

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따른 고객 안내문

(연관상품 및 결합상품 해지 안내)

번호이동시 시내전화와 연계되어 판매되던 상품(연관상품)이 있으면 번호이동 관리센터에서 해지 확인전화를 드립니다.
또, 결합상품은 약정기간 만기 전이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(설비비 반환 및 지로 단독청구 안내)

설비비형 KT 전화인 경우 고객님의 설비비가 반환됩니다.
전화에 합산 과금되던 서비스는 지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(통화권 준수 안내)

이용자는 시내전화 통화권을 준수해야 하며, 통화권 이탈시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
(수신 시 발신자 요금 안내)

시내전화 가입자가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게 통화할 경우 번호를 기준으로 통화권에 따른
시·내외 요금이 적용됩니다.

(정전시 통화 제한 및 긴급통신 안내)

인터넷전화는 정전시 통화가 안되며, 이사할 경우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사업자에 신고하셔야 119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됩니다.

연관상품 및 결합상품 해지, 설비비 반환 및 지로 단독청구, 통화권주수, 수신 시 발신자 요금, 정전시 통화제한 및 긴급통신 관련하여
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.

√ 성명

(서명 또는 날인)



발신자 번호표시(CID) 변경 신청서

◎ 가입자 정보

가입자명		신청자명	
사업자번호		개인(법정생년월일)	
전화번호		이메일 주소	

◎ 신청번호 (연번일 경우 ‘ ~ ‘ 으로 표시)

070 전화번호	현재 발신자 번호(CID)	변경할 발신자 번호(CID)

[첨부 서류 : 개인 신분증, 통신사이용증명원, 사립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]

1. 변경할 전화번호는 가입자 명의의 유선전화[02.031. 및 전국대표번호(1588 .1600등 .)] 에 한정됩니다.
2. 2015.04.16일 시행 된 전기 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에 의하지 않은 발신번호변작은 금지(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2항) 되어 있습니다
3. 이를 위반시에는 발신번호변작을 한 자와 서비스를 제공한자 모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(벌칙) 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발신자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모든 민,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하며, 발신자번호표시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고객명 :

신청인 : (서명/인)

㈜굿텔레콤 귀중